

교훈 : 성실 	<h1>가 정 통 신 문</h1>	제 2023 - 217호
	<h2>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안내</h2>	담당 : 생활교육부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본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3학년도 1,2차 학교생활인권규정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p>2023년 학교생활인권규정</p>	
---------------------------	--

2023. 12. 28.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